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http://www.jeongseon.go.kr/>

제380호 2016. 1. 20. (수)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16-1호 2016년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역 지정·고시 1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16-10호 2016년 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모집 공고 2
- 정선군 공고 제2016-14호 2016년 봄철 산불 유급감시원 모집 공고 6
- 정선군 공고 제2016-25호 2016년도 제1회 정선군 공무원 근로자 채용 공고 8
- 정선군 공고 제2016-26호 정선군 아리랑박물관 운영 조례(안) 입법 예고 16
- 정선군 공고 제2016-31호 2016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27
- 정선군 공고 제2016-32호 정선군 아리랑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 예고 34
- 정선군 공고 제2016-45호 2016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43
- 정선군 공고 제2016-46호 2016년 그린빌리지 참여마을 모집 공고 55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16-1호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역 지정·고시

산림보호법 제15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입산통제 구역의 지정·해제)의 규정에 따라서 정선군 산불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역을 지정·고시합니다.

1. 통제기간

가. 봄 철 : 2016. 2. 1 ~ 05. 15(104일간)

나. 가을철 : 2016. 11. 1 ~ 12. 15(45일간)

※ 산불조심 기간 중 전 산림에 화기 및 인화물질소지 입산을 금지합니다.

2.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역 지정현황

가. 입산통제구역 지정 현황

구 분	관내 민유림(ha)	입산통제구역(ha)
	38,100	12,768

나. 등산로 개방·폐쇄구역 지정현황

구 분	합 계		개 방		폐 쇄	
	노선수	거리(km)	노선수	거리(km)	노선수	거리(km)
	41	148.5	10	44.2	31	104.3

3. 기타사항

가. 산불조심 기간 내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읍·면 장에게 입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입산통제 기간이 지나면 자동 해제되므로 입산신고를 하지 않고 입산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1월 11일

정 선 군 수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16-10호

2016년도 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모집 공고

2016년도 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1일
정 선 군 수

1. 모집인원 : 70명(정선군청 산림정책과 30명, 고한읍 5명, 사북읍 5명, 신동읍 5명, 화암면 5명, 남면 5명, 여량면 5명, 북평면 5명, 임계면 5명)
2. 종사업무 : 산불예방 활동 및 진화, 기타 산림사업 등
3. 근무기간 : 봄철 2016. 02. 01. ~ 05. 15.
(배치기간은 기상상태 등 정선군 사정에 따라 조정)
4. 모집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체력검정 포함)
5. 응시자격
 - 가. 모집공고일(2016년 01월 01일) 현재 정선군내 거주자로서 주민등록이 정선군으로 되어 있는 신체 건강하고 야간산불 등 비상 시 대비 각 근무지(정선군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사무실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20분내 소집 가능한 자.
 - 나. 응시연령 : 만25세 이상 ~ 55세이하(단 3년이상 경력자는 65세까지)
6. 진화대원 모집일정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16. 01. 11. ~ 2016. 01. 22.
 - 시험구분 : 면접시험, 체력검정
 - 시험장소 : 정선군청 환경산림과,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 시험일자 : 2016. 01. 26(화) 10:00 ~
 - 대상자 확정발표 : 2015. 01. 28(목)
7. 대상자 확정발표 : 개별통보
8. 확정 대상자 처우 : 정선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으로 채용
9.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가. 교부 및 접수
 - 정선군청 산림정책과 산림보호팀 (전화 560-2423~5)
 - 고한읍사무소(560-2614), 사북읍사무소(560-2624), 신동읍사무소(560-2634),

화암면사무소(560-2644), 남면사무소(560-2654), 여량면사무소(560-2664),
북평면사무소(560-2674), 임계면사무소(560-2682)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자필로 빠짐 없이 기재하여 본인이 접수처에
직접 제출(타 지역 원서접수 불가)

10.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 1통(소정양식) - 3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부착

나. 이 력 서 : 1통

다. 주민등록등본 : 1통

라. 채용신체검사서 : 1통(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지정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예외 사항없음

11.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당일 10분전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장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
하여 시험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나. 제출서류 잘못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부담입니다.

. 본 모집공고 계획은 우리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변경 시 별도 공고)

라. 기타 모집에 관한 문의사항은 정선군 산림정책과 산림보호팀 및 해당읍면
산업개발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마.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판단될 시 선발을 취소한다. 끝.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응시원서

종 사 업 무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산불방지업무 보조, 기타 산림사업 보조 및 지원				응 시 번 호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연령				
주 소	(전 화 :) (휴대폰 :)					
경 력						
병 역	① 필 ② 미필 ③ 면제		복무기간	년 개월		
혼 인	①기혼 ②미혼 ③기타	세대주	①해당 ②해당없음	부양가족 (세대인원)	인 (* 인)	
취업관련	①실직 ②미취업	실업 기간	년 월	전직업	회사원,제조업,자영업,서비스업, 공무원,학생,농어업,주부,기타	
취업취약계층 해당여부 (본인)	<취업취약계층> ①장기실업자(구직등록일 기준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자, 청년은 졸업일 기준), ②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 이하 : 차차상위계층), ③고령자(만55세이상), ④장애 애인, ⑤여성가장, ⑥결혼이민자, ⑦북한이탈주민					
위 본인은 2016년도 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모집에 응시 코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본인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정부 복지사업에 사업대상 자 선정을 위한 자격조사 및 사후관리, 부정.중복수급 방지 등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이용되고 제공되는데 동의합니다. 첨부서류 : 자필이력서,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년 월 일 정 선 군 수 귀하						사 진 (3×4cm) 반명함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응시표

종 사 업 무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산불방지업무 보조, 기타 산림사업 보조 및 지원	응시번호	
성 명		시험일시	
주민등록번호			
년 월 일		시험장소	
정 선 군 수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 성 요 령>

가. 성 명 : 한글·한자 정자로 기재합니다.

나.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증에 의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다. 연 령 : 2016년도 현재를 기준일로 하여 만 연령을 기재합니다.

라. 주 소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합니다.

마. 경 력 : 산불관련 또는 사회경력을 기재하되 근무기관명을 명기하고, 다른 공무원임용 또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기재합니다.

바. 병역, 혼인, 취업관련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고, 세대주 및 부양가족은 주민등록등본 기재사항과 동일해야 합니다.

사. 사 진 :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5cm×4.5cm) 탈모 상반신 사진(동일 원판의 것으로서 얼굴부분이 커야함)

아. 기 타 : 응시번호(※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4.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응시표를 지참하지 아니한 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원서첨부 사진과 동일원판의 것) 1매를 지참하여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정선군 공고 제2016-14호

2016년도 봄철 산불유급감시원 모집 공고

2016년도 봄철 산불유급감시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1일
정 선 군 수

1. 모집인원 : 90명(정선읍 13명, 고한읍 5명, 사북읍 5명, 신동읍 10명, 화암면 12명, 남면 12명, 여량면 9명, 북평면 9명, 임계면 15명)
2. 종사업무 : 산불예방 활동 및 감시, 산불진화, 기타 산림사업 등
3. 근무기간 : 봄철 2016. 02. . ~ 05. 15(기간중 일)
4. 모집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5. 응시자격 : 모집공고일(2016년 01월 01일) 현재 정선군내 거주자로서 주민등록이 정선군으로 되어 있는 신체건강하고 야간산불 등 비상 시 대비 각 근무지(해당 읍·면사무소)에 20분내 소집 가능한 자.
6. 대상자 확정발표 : 2016. 01월중 해당 읍·면별 개별통보
7. 확정 대상자 처우 : 해당 읍·면 산불유급감시원으로 채용(1일 임금 48,500원)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가. 교부 및 접수기간: 2016. 01. 11. ~ 01. 22.
 - 정선읍사무소(560-2604), 고한읍사무소(560-2614), 사북읍사무소(506-2624), 신동읍사무소(560-2634), 화암면사무소(560-2644), 남면사무소(560-2654), 여량면사무소(560-2664), 북평면사무소(560-2674), 임계면사무소(560-2682)
 -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응시원서를 자필로 빠짐 없이 기재하여 접수처 제출
9. 제출서류
 - 가. 응시원서 : 1통(신청자 직접방문 후 작성)
 - 3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부착
 - 나. 이 력 서 : 1통
 - 다. 주민등록등본 : 1통
 - 라. 채용신체검사서 : 1통(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지정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10.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제출서류 잘못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부담입니다.

- 나. 본 모집공고 계획은 우리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변경 시 별도 공고)
- 다. 산불위치관제 시스템 도입에 따른 위치관제단말기 사용에 동의 하지 않으면 선발 대상에서 제외 합니다.
- 라. 기타 모집에 관한 문의사항은 정선군 환경산림과 산림보호팀 및 해당읍·면 산업 개발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 마.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판단될 시 선발을 취소한다. 끝.

정선군 공고 제2016-25호

2016년 제1회 정선군 공무원(청원산림보호직원) 채용 공고

2016년 제1회 정선군 공무원(청원산림보호직원)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1일
정 선 군 수

1. 채용인원 : 1명
2. 근무예정부서 및 응시가능 지역

근무기관	응시가능 거주지역
정 선 군 (환경산림과)	정선군(공고일 현재 정선군 주민등록자)

3.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여부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3배수로 결정.
- ※ 서류전형 심사기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경력, 자격 등

나. 제2차 시험: 면접시험

- 기본사항을 상·중·하로 평가
 -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4. 응시자격: 다음 응시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험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 : 정년 >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연령 : 18세이상 (1998.12.31.이전 출생자)

○ 성별 : 제한 없음

○ 거주지 : 채용시험 공고일 현재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산림보호·산불방지·산림병해충방제·산림관리 등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서 현 장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사람.

○ 공무원채용신체규정상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신체 건강한 사람.

○ 남자인 경우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교부기관 소정양식)

○ 자필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1부

○ 자격증(운전면허증 포함) 1부 (원본지참)

○ 최종학교졸업 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1부(산림관련업무 경력자에 한함) ※ 발급확인자 서명 연락처 필히 기재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6. 기타사항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고,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 제출자는 **【☎(033)560-2233】**로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이하인 경우 재공고 후 시험 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3일 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7. 시험일정

내 용	일 정	장 소
응시원서 접수	2016.1.11(월) ~ 1.18(월)	방문·우편접수
서류전형	2016.1.19(화) ~ 2.22(금)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6.1.26.(화)	
면접시험	2016.2.04.(목)	정선군청 소회의실
최종합격자 발표	2016.2.15(월)	

응 시 원 서(원본)

정선군수 귀하

2016년 제1회 정선군 공무원(청원산림보호직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당해시험의 정지 또는 무

효가 되고 채용계약 해지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주 소	(전화)										
학 력 (최종)	대학교 이 하	년 월 일		학교(과 년) 졸업,재학,수료,중퇴							
	대학원	년 월 일		학교(과 년) 졸업,재학,수료,중퇴							
*응시번호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응시분야				
							청원산림보호직				

...

공무직 응시원서 (부 분)								사 진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3.5×4.5cm)					
* 응시번호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응시분야						
							청원산림보호직						

...

공무직 응시표			성 명	(한글)						사 진 (2) 위와동일한 사진
*응 시 번 호			생년월일							
응시분야	정원산림보호직									
2016년 월 일 정선군수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직접 작성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 ① 전 화 : 상시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
- ② 학 력 : 대학교 이하란은 모든 응시자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대학원 졸업·재학·수료·중퇴인 응시자는 출신대학 및 대학원 모두를 기재
- ③ 「*」 표시가 되어있는 접수번호란은 기재하지 않음

사 진		이 력 서				
		성 명	한 글		생 년 월 일	(만 세)
			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학 력	기 간		학 교 명		전공(학위)	
경 력	기 간		근 무 처 (부 서)	직위(급)	업 무 내 용	
자 격 사 항	취 득 년 월 일		자 격 . 면 허 증		시 행 처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16 년 월 일						
성 명 : (서명)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정선군에서 시행하는 2016년도 공무원채용시험 【청원산림보호직】응시자로서, 정선군에서 실시하는 학위,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 자료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2016년 월 일

성 명 :

생년월일 : . . .

서 명 :

정선군수 귀하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2016년 월 일
작성자 (서명)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성장과정, 가족사항, 좌우명, 군복무, 학교생활 및 전공분야, 근무연구활동 및 업적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공고 제2016-26호

「정선군 아리랑박물관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월 11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아리랑박물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정선아리랑전시문화센터 내 아리랑 박물관 준공 후 관리·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박물관을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박물관 명칭은 국내외 아리랑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의미에서 정선아리랑 박물관이 아닌 아리랑 박물관으로 정하였음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 나.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규정함(안 제8조)
- 다. 박물관 대관은 기획전시실에 한정함(안 제16조)
- 라. 박물관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2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16년 1월 31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정선군수(참조 : 문화관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26131)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17 정선군청 문화관광과
- 연락처 : 전화(033-560-2563), 팩스(033-560-2593),
이메일(sig10@korea.kr)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아리랑박물관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선군이 설립하는 아리랑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품”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하는 아리랑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관람하는 사람(이하 “관람자”라 한다)을 위하여 상설 또는 일정기간 동안 전시하는 유물 등의 전시물을 말한다.
2. “유물”이란 박물관에서 보존·전시·연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집의 대상이 되는 모든 유형의 사료 등을 말한다.
3. “수장품”이란 구입, 기증, 관리전환, 위탁관리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유물을 말한다.
4. “수장고”란 수장품을 보관하는 박물관의 창고를 말한다.
5. “이용”이란 수장품을 사진촬영, 탁본, 복제, 모사 등을 하거나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제반사항을 말한다.

제3조(시설)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하는 박물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둔다.

1. 기본시설 :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수장고
2. 부대시설 : 부속설비, 장비, 그 밖에 필요한 시설

②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위하여 박물관 내·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뮤지엄 숍
2. 카페테리아
3. 부설주차장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일반에게 공개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
3. 추석
4.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5조(업무) 박물관은 법 제4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리랑 관련 사료·자료와 고고·미술·공예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 및 연구
2. 수장품의 보관·보존처리 및 전시
3. 향토사의 조사·연구 관련 학술단체 및 민간과의 협력
4. 사회교육
5. 그 밖에 군수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자료수집) ① 군수는 전시·연구 및 교육(이 조에서 “전시 등”이라 한다)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료를 구입할 경우에는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2명 이상의 전문 감정원의 감정을 거쳐 구입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전시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을 기증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기증자에게는 기증확인서와 평가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정해진 사례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전시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제2장 관람

제7조(관람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선군 인터넷홈페이지에 미리 게시해야 한다.

제8조(관람료)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9조(관람 및 행위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박물관의 관람(이하 “관람”이라 한다)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
2.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사람
3. 그 밖에 전시품 등을 손상할 우려가 있거나 관람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관람자는 박물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흡연이나 음주·취식 등을 하는 행위
2. 조명 및 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즉시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손해배상) 관람자는 전시품 및 시설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3장 수장품

제11조(관리) ① 군수는 수장품에 대하여 자료목록 및 카드를 작성·비치하고 관리·점검해야 한다.

② 군수는 수장품의 훼손, 도난, 화재 등에 대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특별한 관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수장고) 군수는 수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격납시설을 마련하고 전시 또는 대여해 준 것 외의 수장품은 수장고에 보관해야 한다.

제13조(대여) ① 군수는 수장품의 원형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장품의 대여·열람·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장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박물관에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교육기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제14조(대여조건) ① 군수는 수장품을 대여할 경우에는 그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수장품을 대여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해당 유물의 대여에 따른 반출·반입을 할 경우에는 필요한 사진촬영·실측기록·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군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5조(변상책임) ① 수장품을 대여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해당 수장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 또는 그 밖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군수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리 또

는 복원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변상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수장품을 대여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복원조치나 변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대여를 받을 기관이나 단체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해당 보험의 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대관

제16조(허가대상 및 범위) ① 군수는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시설의 대관(이하 “대관”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1. 아리랑 관련 자료 전시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 관련 전시

② 대관시설의 범위는 기획전시실에 한정한다.

제17조(허가 및 변경) ① 제16조에 따라 대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대관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대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변경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군수는 박물관의 운영,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대관자”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대관된 시설 및 그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허가제한 및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관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대관시설을 훼손하고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사람
2. 대관조건을 위반하여 대관을 취소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대관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박물관의 관리 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대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관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
2. 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조건을 위반한 때
3.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때

4. 행사장 내 질서유지가 매우 어려운 때

5. 다른 사람의 관람에 방해가 되는 소음이 발생한 때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해당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9조(대관자 준수사항) ①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시설이나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대관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20조(대관료) ① 대관자는 사용예정 10일 전까지 별표의 대관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그 사용 전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미 납부한 대관료를 해당 대관자에게 되돌려 주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사용 전에 대관을 취소한 때에는 납부한 전액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때

2. 군수가 공익상 필요한 때

3. 사용자가 사용 7일 전까지 취소한 때. 다만, 그 이후 취소한 때에는 80퍼센트로 한다.

③ 군수는 사용자의 사용기간 중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관을 해제한 때에는 그 남은 기간의 대관료를 되돌려 줄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박물관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

2. 박물관의 운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21조(손해배상) 대관자는 제19조제1항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를 해야 하며, 대관행사에 따른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대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5장 관리 운영

제22조(관장) ① 군수는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 발전을 위하여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두고 박물관을 관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장을 둘 경우에는 명예직 또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으며, 박물관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건립과 운영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사람

2. 자격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운영 발전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관장은 박물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관리 운영에 관한 연구 및 건의

2.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자문

3. 국내외 다른 박물관과의 교류 촉진 및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직무

④ 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장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관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군수는 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

⑥ 군수는 제3항의 직무를 수행하는 관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위탁운영) ① 군수가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해당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군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해서는 우선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사문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른다.

제24조(협약체결) ① 군수는 제23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위·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협의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위탁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내용 및 기간

2. 수탁자의 의무(명의와 책임을 포함한다)

3. 경비보조금액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박물관의 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를 지도·감독하며, 수탁자의 위탁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현장 및 서류를 점검 또는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점검 및 점검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그 업무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협약취소 등)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협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제25조에 따른 군수의 지도·감독을 거부하거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2. 위탁운영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3.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4. 협약의 취소 또는 해지를 원한 때
5.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6. 그 밖에 군수가 위탁운영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때

제6장 운영위원회

제27조(구성 등) ① 군수는 박물관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선군 아리랑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박물관 운영에 대한 기본방침
2. 박물관 자료의 수집·전시·보관
3. 그 밖의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은 관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7명~10명으로 위촉한다.
2. 위원장을 호선하는 회의는 관장이 주재한다.
3.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4.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박물관 담당주사로 한다.

제28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군수, 관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29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직무수행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3. 장기치료·여행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때
4. 그 밖에 관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박물관의 개관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 전이라도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박물관의 개관일부터 그 위탁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별표]

아리랑박물관 시설 대관료(제20조 관련)

(단위: 원)

구분	면적	사용기준	대관료	비 고
기획전시실	76.51㎡	1일	35,000	○ 기준일 1일 미만 시간은 사용기준으로 본다

관계법령 발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설립과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5조(관람료와 이용료) ①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관람료, 그 밖에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②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의 관람료, 그 밖에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정선군 공고 제 2016-31호

「2016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근로여가가 있는 군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정선군에서 추진하는 「2016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사업명칭 : 2016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 2016. 3. ~ 6월(1차)
- 모집기간 : 2016. 1. 18(월) ~ 1. 26(화), (9일간)
- 모집인원 : 3개 12개 사업 91명

구 분	유 형	사 업 명	사업 장수	사업 인원	사업 읍면	사업비			
						계	인건비	재료비	
합 계			12	91		835,523	607,623	227,900	
재정 지원 사업 (국비)	소 계		2	35		328,621	228,621	100,000	
	[1유형] 지원자원 활용형	함백산 야생화단지 명품화 사업	1	20	고한읍	179,573	129,573	50,000	
		군유림 산채재배단지 조성사업	1	15	화암면	149,048	99,048	50,000	
자체 사업 (군비)	소 계		10	56		506,902	379,002	127,900	
	[1유형] 지역자원 활용형	정선아리랑제 활성화 홍보사업	1	4	문화 관광과	34,000	34,000		
		정선터미널 문화공간 운영사업	1	2	문화 관광과	17,000	17,000		
		그림바위 미술공간 가꾸기 사업	1	2	문화 관광과	17,000	17,000		
	[4유형] 지역공간 개 선 형	웰빙 산책로 및 명품 꽃길 조성사업	1	10	정선읍	89,900	65,000	24,900	
		시가지 꽃길조성 및 공원 조성사업	1	6	사북읍	54,000	39,000	15,000	
		시가지 꽃길조성 및 공원 조성사업	1	9	신동읍	83,002	55,002	28,000	
		민동산 역사보존 증식 및관광명소 사업	1	6	남면	59,000	39,000	20,000	
		아우라지 광장 꽃길 조성사업	1	6	여량면	49,000	39,000	10,000	
		북평면 경관작물 식재사업	1	6	북평면	59,000	39,000	20,000	
		자전거 도로관리 사업	1	5	임계면	45,000	35,000	10,000	

○ 참여자격

- 접수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단위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0% 범위	974,899	1,659,962	2,147,411	2,634,860	3,122,309	3,609,759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 사업 참여 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초과이거나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 * 단, 질병, 군복무, 출산(본인) 등의 사유는 제외
-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 지역공동체일자리(행자부), 공공근로(지자체), 공공숲가꾸기(산림청)
 -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 1세대 2인 참여자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공적연금 수령자 :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 *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및 건강보험료(신청서의 건강보험료 정보공개동의로 같음)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 하지 않은 자
- 사업 참여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 15 및 ' 16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같음
-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 되는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질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 하다고 판단되는 자
- 반복·중복 참여 등 참여제한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필수), 주민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지참),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같음), 장기실업자, 휴·폐업자 관계증명서(해당자 지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지참), 금융정보제공동의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 근무여건 : 시간당 단가는 6,030원으로 하고 1일 근로시간은 자치단체 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65세 미만은 주 26시간, 65세 이상은 주 15시간 이내로 근무
- 참여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 공고내용 문의처 : 정선군 지역경제과 ☎ (033)560-2351
 - 주소지 읍면 산업개발부서 연락처

읍면별	정선읍	고한읍	사북읍	신동읍	화암면
전화번호	560-2817	560-2821	560-2846	560-2828	560-2744
읍면별	남 면	여량면	북평면	임계면	
전화번호	560-2831	560-2763	560-2836	560-2783	

- 기타 :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중 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회수합니다.

2016년 1월 18일
정 선 군 수

붙임 1**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표준서식)**

접수번호		(신청일자 : 2016. . .)			
성명		남, 여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전화번호		
이력사항	세대주 여부	①해당 ②해당없음		세대원수(세대주, 동거인제외)	명
	취업관련	①실직 ②미취업		전직업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실업기간	20 . . . ~ 20 . . .			
	경력사항 등				
전문가인 경우	자격(), 경력(), 기타() *상세히 기술				
참여 희망사업	①		②		
구직등록여부	등록 (), 미등록 ()				
과거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여부	참여사업명	①	②	③	
	참여기간	20 . . . ~ 20 . . .	20 . . . ~ 20 . . .	20 . . . ~ 20 . . .	
공무원 가족여부	* 가족중에 공무원이 있는 경우 기재				
장애인(본인, 가족) 여부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인 가족의 경우 기재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	관계	성명	건강보험증 번호	비고	
	본인		-		
	(피)부양자				
			-		
재산 정보제공동의서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고	
	직장·지역 건강보험 가입자 모두 기재	본인	-		
		배우자	-		
			-		
			-		

① 본 신청서는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코자 하오니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화·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뒷 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 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시
취업취약 계층항목	(본인)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참여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 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종료시
-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20 년 월 일

OOO기관장 귀하

<붙임 2>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청자 확인

※ 본란은 담당공무원이 작성하니, 신청자는 작성하지 마십시오.

접수번호	
성명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대상자	해당, 해당없음	
② 공무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있음, 없음	
③ 구직등록 여부	등록, 미등록	
④ 만 65세 미만자로서 공공근로 등 각종 정부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최근 2년이하* 참여여부(*사업신청일 기준)	해당없음, 2년이하 참여 () 2년 이상 참여()	
⑤ 취업보호·지원대상자	해당, 해당없음	
⑥ 장애인(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등록증 소지자)	해당, 해당없음	
⑦ 여성세대주 (가장)	혼인유무	유, 무
	가족관계 등록부 상 남편 유무	유, 무
	남편의 근로능력	유, 무(증명서 첨부)
⑧ 북한이탈 주민	해당, 해당없음	
⑨ 결혼이주 여성	해당, 해당없음	
⑩ 장기실업자 및 휴·폐업자	해당, 해당없음	
⑪ 노숙자 또는 쪽방촌 거주자	해당, 해당없음	
⑫ 기재사항	장애등급 : 급 (* 증명서 확인) 장애인 본인 여부 : 본인, 가족 * 중증장애인 : 해당, 해당없음	
⑬ 기타 담당자 의견		담당자 확인 성명 (인)

2016 . .

○○ 읍·면·동 주민센터(장)

※ 주의 : 신청서상의 개인정보는 대상자 선발 등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목적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함

붙임 3**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서**

1. 정보를 제공받을 기관명 : ○○시(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팀

2. 정보제공의 범위 및 사용목적

- 정보제공 범위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접수 시작일 현재 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
- 사용목적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거 정보제공 동의자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신청자격 요건 파악에 필요한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3. 금융거래조회기간 : 2016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신청일부터 사업종료일까지

4.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자 인적사항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신청일	신청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확인
2016. . .	본 인		-	(인)
	배우자			(인)

5. 정보제공 금융기관명

-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
 - 「장기신용은행법」에 따른 장기신용은행
 - 「단기금융업법」에 따른 단기금융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 대행회사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인삼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그 밖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 ※ 위 정보제공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해당 금융협회 등을 통하여 금융거래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본인의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그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를 받지 않는 데 동의합니다.

○○시장(군수) 귀하

2016년 월 일

※ 참고사항 :

- 본 동의서는 동의철회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팀이 정보를 제공받는 금융기관은 5번의 기관과 같습니다.
- 동의 확인 : 자필서명 또는 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정선군 공고 제2016-32호

「정선군 아리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월 1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아리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아리랑센터 준공 후 관리·운영 및 시설 사용료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아리랑센터를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건물 명칭은 아리랑 공연예술의 심장부 역할을 담당하는 의미에서 『아리랑 센터』로 정하였고 건물내 기능별 명칭은 공연장은 “아리랑 홀” 박물관은 “아리랑 박물관”으로 정하였음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설치(안 제1조, 제2조)
- 나. 사용허가 및 제한 (안 제6조)
- 다.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안 제9조, 10조)
- 라. 아리랑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16년 2월 1일 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정선군수(참조 : 문화관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26131)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17 정선군청 문화관광과

○ 연락처 : 전화(033-560-2548), 팩스(033-560-2593),

이메일(chldusrb0113@korea.kr)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아리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이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인 정선아리랑을 보존·육성함으로써, 군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정선아리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선군 아리랑센터(이하 “아리랑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아리랑센터는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정선읍 애산로 51(일원)에 둔다.

제3조(시설) 아리랑센터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공연장, 연극·무용 및 음악연습실
2. 부대시설: 무대조명 시설, 음향시설 등 무대공연 및 행사 등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와 냉·난방 시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제2장 개관·휴관 및 사용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아리랑센터는 제2항에 따른 휴관일 외에는 개관한다.

② 아리랑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군수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미리 게시해야 한다.

1. 1월 1일, 설날·추석날(연휴를 포함한다), 매주 일요일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③ 아리랑센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미리 시설의 사용신청이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제5조(입장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리랑센터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술에 취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각종 행사, 공연·전시(이하 “공연 등”이라 한다)에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니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안전유지 및 공연 등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6조(사용허가 및 제한) ① 아리랑센터를 공연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하 “사용”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개인(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리랑센터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과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제1조에서 같다)정서 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제7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나 사용정지를 두 차례 이상 받은 단체 등이 신청할 경우
4. 특정종교의 선교·포교의 경우
5. 정치적 목적의 공연 등인 경우
6.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의 경우

제7조(허가취소 등)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한에 납부하지 않은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3. 부정한 방법 또는 거짓으로 확인된 때
4. 「공연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연 등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때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군수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8조(사용시간) ① 아리랑센터의 한 차례 사용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 해당 연습실 및 부대시설·편의시설도 또한 같다.

사용구분	기준	사용시간
공연장	오전	08:00 ~ 12:00
	오후	13:00 ~ 17:00
	야간	18:00 ~ 22:0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한 차례 사용으로 본다.

제3장 사용료

제9조(징수) 군수는 아리랑센터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별표 및 납입고지

서에 따라 해당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제10조(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 등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할 경우
2. 국가 또는 군이 후원하는 비영리 공익목적의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이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예술활동의 경우에는 그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군 문화예술단체
3. 시·도교육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반환) ① 군수는 아리랑센터의 사용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소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을 그 사용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때
2.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3. 사용자가 사용 7일 전까지 취소한 때. 다만, 그 이후 취소한 때에는 80퍼센트로 한다.

② 군수는 사용자의 사용기간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을 해제한 때에는 그 남은 기간의 사용료를 되돌려 줄 수 있다.

제4장 사용자의 설비 등

제12조(설비 및 홍보물) ① 사용자는 아리랑센터의 사용에 특별한 설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자기부담으로 해당 설비를 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설비를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되, 그 비용을 해당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 후 7일 이내에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으면 군수는 임의 처분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공연 등의 홍보물을 아리랑센터 내·외에 부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관람료) ① 사용자는 아리랑센터의 사용목적인 공연 등을 관람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군수의 검인을 받아 관람권이나 입장권(이하 “입장

권”이라 한다)을 발행해야 한다.

② 입장권은 좌석 수 등 수용능력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발행하되, 이를 전산발매 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2항의 범위 이상으로 입장권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는 입장권을 판매한 후 그의 귀책사유로 공연 등이 중단된 때에는 이를 구입한 사람에게 관람료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입장권을 구입한 사람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관람을 하지 못한 때는 제외한다.

제14조(의무 및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리랑센터를 사용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아리랑센터 또는 시설을 망실·훼손한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로 책임을 면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제3항에 따른다.

③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없다.

제5장 위탁운영

제15조(위탁운영자) ① 군수는 아리랑센터를 직접 운영하되,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목적에 타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려는 법인·단체 등은 군수에게 신청을 해야 하며, 군수는 「정선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라 해당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군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관련 법인에 대해서는 우선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아리랑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해당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6조(협약체결) ①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위·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위탁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내용 및 기간
2. 수탁자의 의무(명의와 책임을 포함한다)
3. 경비보조금액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협약취소 등)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협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운영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2.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3. 협약의 취소 또는 해지를 원한 때
4.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5. 그 밖에 군수가 위탁운영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때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아리랑센터의 개관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 전이라도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아리랑센터의 개관일부터 그 위탁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별표]

아리랑센터 사용료(제9조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원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공 연 장	오전 (09:00 ~ 12:00)	90,000	
	오후 (13:00 ~ 17:00)	110,000	
	야간 (18:00 ~ 22:00)	130,000	
연극/무용 연습실	오전 (09:00 ~ 12:00)	50,000	
	오후 (13:00 ~ 17:00)	50,000	
	야간 (18:00 ~ 22:00)	50,000	
음 악 연 습 실	오전 (09:00 ~ 12:00)	35,000	
	오후 (13:00 ~ 17:00)	35,000	
	야간 (18:00 ~ 22:00)	35,000	

■ 휴일(토·일요일, 공휴일) 공연장 사용은 평일 기준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가산함

■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치·철거를 위한 공연장 사용의 경우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 다음 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철거) 사용(23:00이후)의 경우에는 야간사용료의 50퍼센트 징수

■ 공연을 위한 무대설치의 경우에는 해당 기준사용료의 30퍼센트로 함

2.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원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난 방	공연장	1시간	80,000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연극/무용 연습실	1시간	30,000	
	음악 연습실	1시간	20,000	
냉 방	공연장	1시간	60,000	
	연극/무용 연습실	1시간	20,000	
	음악 연습실	1시간	20,000	
조 명	무대조명	1회	100,000	연습의 경우 무대조명은 50퍼센트 적용
	드라이아이스	1회	30,000	
	스모그	1회	30,000	
음 향	유선마이크	1회	30,000	3개 기본
	무선마이크	1회	20,000	
	녹화/녹음	1회	30,000	
인력지원	효과기기 운용	1인/일	60,000	-기본: 09시~18시 -18시~22시: 추가30.000 원/회
	무대지원	1인/일	60,000	
	조명지원	1인/일	60,000	
	음향지원	1인/일	60,000	
그 밖의 부대시설	영화촬영	1회	50,000	중계료 및 테이프는 사용 자 부담
	TV(중계. 비디오녹화)	1회	30,000	
	라디오중계	1회	30,000	

관계법령 발췌

□ 「문화예술 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공연법」

제8조(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육성을 위하여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라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정선군 제2016-45호

2016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 공고

「2016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3일
정 선 군 수

1. 지 원 기 간 : 2016. 1. ~ 군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2. 지 원 분 야 : 태양광(9), 태양열(7), 지열(3)
3. 지원예정량 : 약19호
4. 지 원 예 산 : 금47,500,000원 (지방비 예산 소진시 까지)
5. 보조금 지원단가

○ 보조금 지원단가 : 2016년 한국에너지공단 고시내용 참조

에너지원	설비용량	보조금 지원단가	비고
태양광	3kW이하	2,000,000원	국비보조금 별도 (에너지원별 용량별 단가 참조)
태양열	4㎡초과 ~ 7㎡이하	1,000,000원	“
	7㎡초과 ~ 14㎡이하	2,000,000원	“
	14㎡초과 ~ 20㎡이하	2,500,000원	“
지열	10.5kW이하	2,800,000원	“
	10.5kW초과 ~ 17.5kW이하	4,000,000원	“

6. 선정기준 : 군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선정

유의사항

- ※ 에너지관리공단의 그린홈 사업승인 이후에도, 군 예산이 소진될 경우에는 군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을 양지바랍니다.
- ※ 따라서, 에너지관리공단 사업승인 이후, 군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문의 후에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 에너지원별 용량별 보조금(국비) 지원기준

(단위 : 천원, VAT포함)

구 분	설비 또는 용량(성능) 구분		보조금 지원단가	도서지역 지원단가
태양광 (고정식)	단독주택	2.0kW이하	800/kW	960/kW
		2.0kW초과~3.0kW이하	670/kW	800/kW
	공동주택	~ 30kW/동	800/kW	960/KW
태양열	평판형· 진공관형	7.0㎡이하	10.0MJ/m ² ·day초과	580/m ²
			7.5MJ/m ² ·day초과~ 10.0MJ/m ² ·day이하	540/m ²
			7.5MJ/m ² ·day이하	490/m ²
		7.0㎡초과~ 14.0㎡이하	10.0MJ/m ² ·day초과	510/m ²
			7.5MJ/m ² ·day초과~ 10.0MJ/m ² ·day이하	470/m ²
			7.5MJ/m ² ·day이하	420/m ²
		14.0㎡초과~ 20㎡이하	10.0MJ/m ² ·day초과	460/m ²
			7.5MJ/m ² ·day초과~ 10.0MJ/m ² ·day이하	420/m ²
			7.5MJ/m ² ·day이하	380/m ²
			7.5MJ/m ² ·day이하	380/m ²
	자연순환식 온수기	6.0㎡급		2,620/대
지열	수직밀폐형	10.5kW이하	660/kW	790/kW
		10.5kW초과~17.5kW이하	500/kW	600/kW
연료전지	1kW이하		21,990/kW	26,390/kW

- 주) 1. 신청자 자부담액은 참여기업과의 계약에 의거 결정
2. 국토교통부 지정 제로에너지 주택 시범사업 및 친환경 에너지타운 사업의 경우 우선지원
3. 발전설비는 계통연계를 기준으로 함
4. 지열대용량(17.5kW초과)의 보조금은 건물지원 사업의 보조금 지원단가를 적용
5. 보조금 지원단가는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6. 정부 보조금은 만원 단위 미만 절사하여 지원
7. 태양광의 경우 추적식, BIPV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8. 소형풍력은 접수 후 별도 검토 후 지원
9. 보조금 가산지역 대상은 [별첨 8]에 명시된 지역임
10. 태양열분야는 설비별 단위면적당 1일 집열량(인증서)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
11. 태양광 결정질 모듈의 경우 정격효율 14%미만 인증제품 설치 시 보조금 지원대상 제외
12. 모든 설비는 설치된 용량의 비율에 따라 보조금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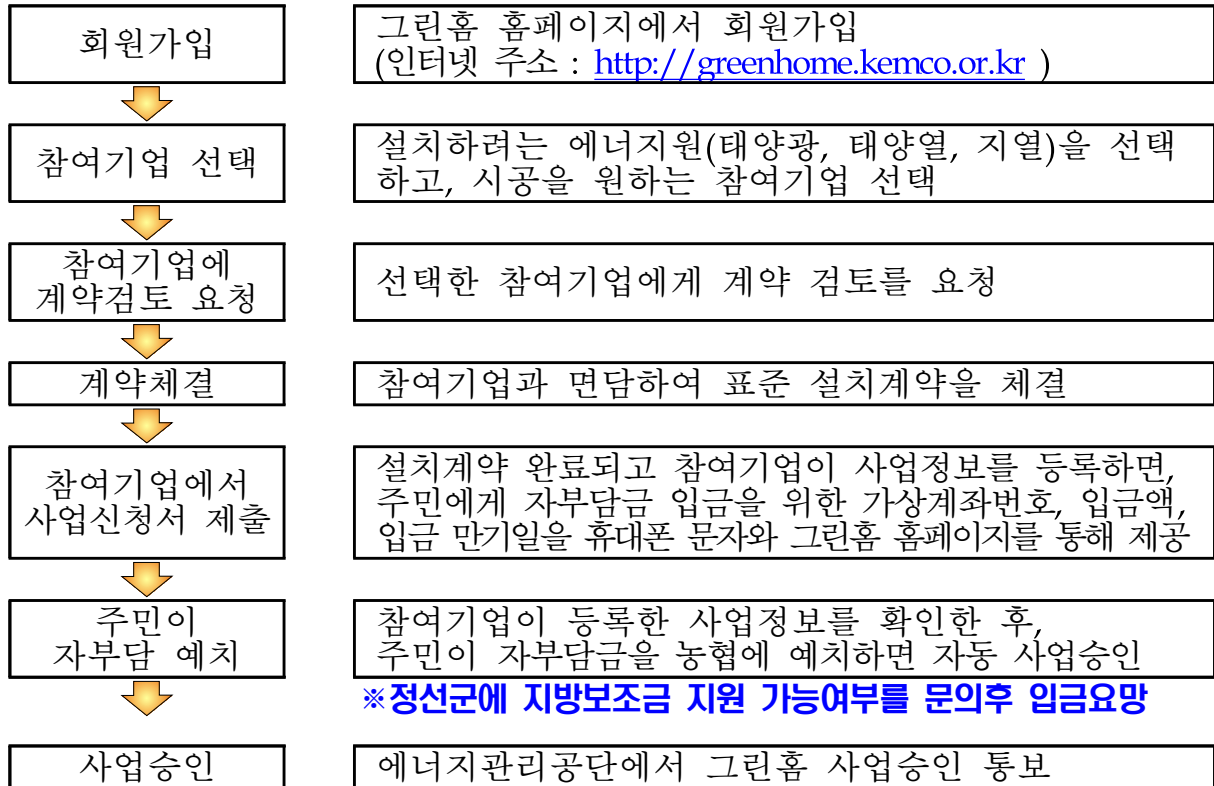
13. 공동주택 전체 가구용이 아닌 개별 가구용으로 태양광설비를 설치할 경우 단독주택 단가 적용

14. 에너지원별 보조금 지원기준 범위를 초과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설비용량의 110%까지 설치 가능하며, 보조금은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지급

7. 지원방법 : 그린홈 설치가 완료되면 설치 주민에게 지방보조금을 직접지급

8. 그린홈 사업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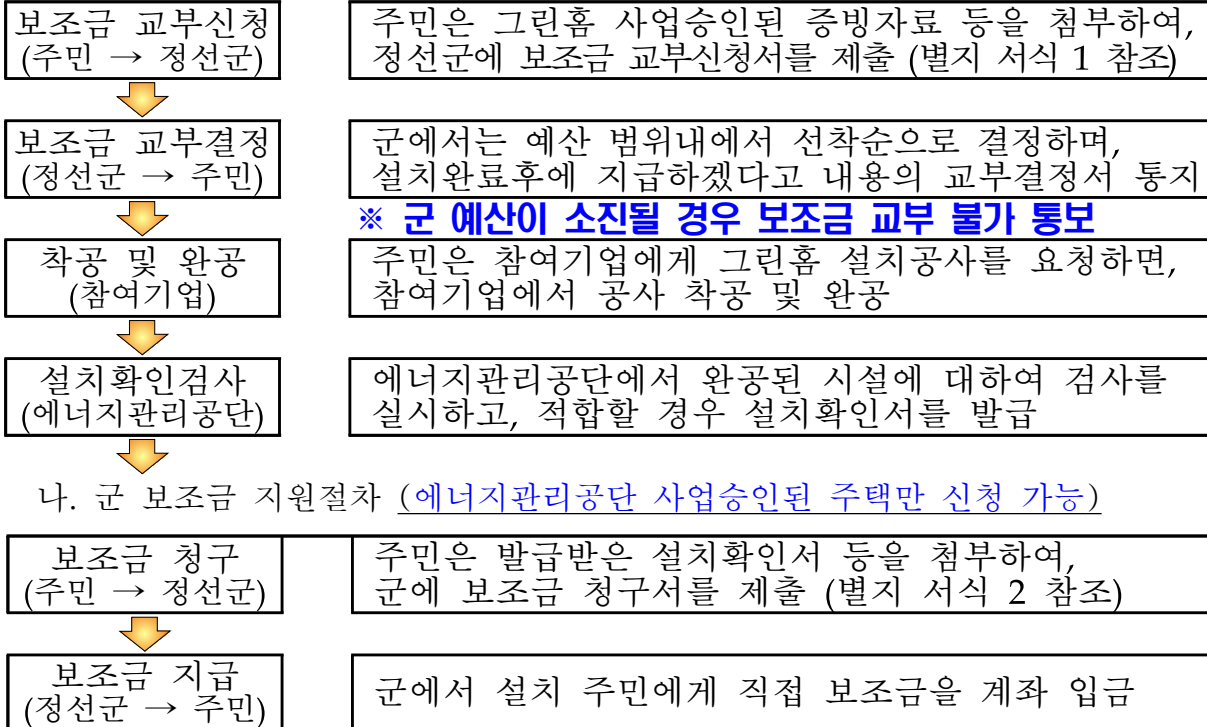
가. 에너지관리공단 사업승인 절차 (주민이 직접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먼저 이행)



주) 1. 에너지관리공단의 사업승인은 국비보조금 지원을 의미하는 것이며,

2. 정선군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군에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으셔야 하며,

3. 군 보조금 교부결정은 금년도 예산범위내에서 선착순으로 진행합니다.



※ 국비보조금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참여기업에게 직접 지급

9. 사업추진시 유의사항

가. 그린홈 설치 희망자는 그린홈(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하여야 하며, 시공할 참여기업을 직접 선택하고, 직접 계약하며, 주민 자부담금을 금융기관(농협) 가상계좌에 선예치 하셔야 한국에너지공단의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2016년도 개별주택에 대한 사업신청 접수를 2회(2월, 3월)에 걸쳐서 접수받고 있으며, 사업승인은 선착순으로 진행 될 예정이므로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관리공단 공지사항 - 사업신청 및 처리일정】

기 간	진행내용	1차	2차
1~3주	참여기업 선택 및 계약 체결	1.25(월) ~ 2.5(금)	3.21(월) ~ 4.8(금)
2주	참여기업 서류제출 완료	2.1(월) ~ 2.5(금) (매일 10:00 ~ 17:00)	3.21(월) ~ 4.1(금) (매일 10:00 ~ 17:00)
3주	태양광 공동주택 서류제출 완료	-	4.6(수)~4.8(금) (매일 10:00 ~ 17:00)
3~4주	서류검토 및 가상계좌 예치 금 예치(사업승인)	2.10(수) ~ 2.26(금)	4.11 ~ 4.22(금)

- * 서류 제출 시 에너지원별 제출시간 구분 진행(홈페이지 별도 안내)
- * 접수시간 : 매일 10:00 ~ 17:00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 가상계좌 예치 만료일(가상계좌 발급일로부터 7일)까지 신청자 가상계좌 예치금 미납 시 사업 자동취소

다. 2016년 개별주택에 대한 지방비 지원은 한국에너지공단 사업 승인된 주택에 한하여 선착순으로 교부결정하고, 설치 완료 후에 지급할 예정 이므로, 사업신청 전에 정선군 지역경제과에 보조금 지원 가능여부를 문의 후 한국에너지공단에 사업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비 보조금 지원은 그린홈 설치가 완료되면 주민에게 직접 지급되기 때문에, 사업신청 당시 금융기관에 선예치하는 주민 자부담금은 실제 자부담액 보다 크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태양열 설비 설치 시 한국에너지공단의 시공기준은 물론 도내 태양열 설비 시공 기준에 따라 시공된 설비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그린빌리지 대상마을(10가구 이상 그린홈을 설치희망하는 마을)로 사업추진하길 원하는 마을에서는 별도의 모집공고문을 참조하여 마을 자체적으로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바. 시공 참여기업별 설치금액, 시공능력, 제품사양 및 효율, 사후관리 (A/S)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여기업 선택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택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주택소유자)에게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그린홈 홈페이지 인터넷 주소 : <http://greenhome.kemco.or.kr>

아. 군 담당부서 : 정선군 지역경제과(☎ 560-2434)

별지 서식 1 ※ 에너지관리공단 사업승인이 완료되는 즉시, 정선군에 보조금 교부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

보조금 교부신청서

- ☐ 사 업 자 :
- ☐ 사 업 명 : 2016년 그린홈 보급사업
- ☐ 교부신청액 : 금 원(금 원)
- ☐ 신청 조건 : 정선군수 교부조건 수용

정선군보조금관리조례 및 정선군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관계 규정에 어김없이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보조금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인 : (인)

- 붙임** 1. 사업실행계획서 1부.
2.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표준설치계약서 사본 1부.
3. 에너지관리공단 사업승인 전산 증빙서 1부.
(그린홈 홈페이지에 표출되는 사업승인 화면을 캡처하여 출력물을 제시 바랍니다)
4. 설비 설치 도면 1부.(태양열 설비 신청 시)

정선군수 귀하

사업실행계획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6년 그린홈 보급사업
- 사업기간 : 2016 . ~ 2016. . .
- 소요예산

총 사업비	국비 보조금	지방비 보조금	자부담
원	원	원	원

2. 사업목적

정부정책사업인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한 정선군의 「2016년도 그린홈 보급사업」에 참여하여 주택에 그린홈을 설치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녹색성장도시 조성에 기여

3. 주요사업내용 (그린홈 설치계획)

구 분	사 업 내 용
설 치 주 택 소 재 지	
에 너 지 원	☐ 태양광 ☐ 태양열 ☐ 지열
설 치 용 량	kW(m ²)
참 여 기 업 상 호	
설비형식(태양열에 한함)	☐ 단일진공 ☐ 이중진공 ☐ 평판형

4. 세부추진계획

단위사업명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고
설치공사	2016. 월 ~ 월	○ 그린홈 설치공사 착공 및 완공	
확인검사	2016. 월	○ 에너지관리공단의 설치확인검사 수검	

5. 기대효과

- 고유가 시대 광열비 절감에 따른 서민생활안정
-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화석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별지 서식 2

※ 그린홈 설치가 완료되고 설치확인검사가 끝난 이후, 정선군에 보조금을 청구할 때 제출하는 서류

보조금 청구서

- ☐ 보조사업명 : 2016년 그린홈 보급사업
- ☐ 보조사업자 : (주민등록번호 :)
- ☐ 청구금액 : 금 원(금 원)
- ☐ 계좌번호 :

상기 금액을 2016년 그린홈 설치를 완료하고 보조금으로 정히 청구합니다.

2016년 월 일

청구자 : (인)

- 붙임 1. 설치확인서(에너지관리공단 발급분) 사본 1부.
2. 세금계산서(참여기업에서 발급분) 사본 1부.
3. 입금계좌 통장사본(본인에 한함) 1부.

정선군수 귀하

참고사항

에너지관리공단 그린홈 사업승인 세부절차 안내
(그린홈 홈페이지 공지사항)

1. 신청자가 주택에 설치하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원을 결정합니다.



<에너지원 선택>

⇒신청자 주택에 필요한 용도 따라 적합한 에너지원(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지원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 <사업소개>, <제품 및 기업소개>를 통해서 확인가능합니다.

※신청자는 주택지원사업 공고를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2. 신청자는 해당 참여기업을 결정한 후 계약검토요청을 합니다.



<계약검토 요청>

⇒설비의 설치가능여부, 설치비용(자부담), 경제적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참여기업을 결정합니다.

⇒신청자는 계약을 체결할 참여기업을 결정한 후 해당 참여기업으로 계약검토 요청을 합니다. (※ 유선통화 필수)

※계약검토요청은 시공분야별로 1회에 2개 기업에 한해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이 모두 되지 않은 경우, 다른 2개 기업에 계약검토 요청을 할 수 있음

※특정 참여기업의 과대홍보 등에 주의!

3.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 표준 설치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체결>

⇒참여기업이 계약검토요청 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참여기업과 계약을 체결 시, 표준 설치 계약서 내용, 설치용량, 설치 시 주의사항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해 안내받고 확인합니다. 특히, 자부담 금액, 설치모델, 무상 하자보수조건, 기타 계약 조건 등을 확인하고 참여기업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조망권, 일조권 침해 등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에 대하여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 에너지센터에서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4.참여기업이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 제출>

⇒신청자와 계약을 체결한 참여기업은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 기간을 엄수하여 신재생에너지센터로 제출합니다.

5. 신청자는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사업진행현황을 확인한 후 가상계좌에 가상계좌 예치금을 예치합니다.

자부담금 예치

사업승인

<예치금 예치>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참여기업이 제출한 사업신청서의 적합여부를 평가하여 신청서검토를 완료한 후 신청자에게 가상계좌 예치금 입금요청 및 가상계좌번호 발급안내 SMS를 발송합니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가상계좌번호를 직접 안내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주택지원 홈페이지 내 신청자마당 -> 사업진행현황 ->참여기업을 선택하여 가상계좌를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자는 가상계좌 만기일(발급한 일로 7일) 내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예치금을 예치합니다.

※가상계좌 만기일(발급한 날로 7일) 내 예치금 미입금 시 사업취소 처리되며, 분할납부 및 기간연장은 불가능합니다.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예치금을 예치하시면,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는 신청하신 사업에 대해 자동으로 사업을 승인합니다.

7.참여기업은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사업승인을 받은 후 주택에 설비를 설치합니다.



<설비 설치>

⇒참여기업은 신청자 주택의 주변 환경 및 기초상태 등을 파악하여 규정에 적합하게 설비를 설치합니다.

※ 일조권, 조망권 등 민사상 분쟁에 관해 신재생에너지센터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참여기업은 에너지원별 사업완료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업공고 참조)

8.참여기업은 설비설치완료 후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치확인을 요청하며, 신청자는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가상계좌 예치금 지급동의를 합니다.



<설치 확인>

⇒설비설치완료 후 참여기업이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치확인을 요청합니다.(<http://www.energy.or.kr>)

⇒설비설치확인이 완료되면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신청자에게 가상계좌 예치금 지급동의 SMS를 발송하고 신청자는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참여기업 평가 후 예치금 지급 동의여부를 확인합니다.

※설치완료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는 신청자의 가상계좌 예치금 지급 동의가 없더라도 자동 지급동의 처리되어 참여기업으로 지급됩니다.

9.신재생에너지설비의 하자 발견 시 참여기업 또는 고장접수지원센터로 접수합니다.



<고장접수지원센터>

⇒신청자는 설비사용 매뉴얼을 항상 비치하고, 사용·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사용 중 설비의 하자 발생 시 참여기업으로 즉시 연락하여 조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하자보수이행증권을 확인하시고 보증기간 내에 고장발생 시에는 무상으로 수리하실 수 있으며 보증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유상으로 수리하셔야 합니다.

⇒시공한 참여기업이 폐업을 하거나 참여기업을 통해서 A/S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에 신재생에너지센터의 고장접수지원센터(☎ 1544-0940)로 연락하시면 A/S접수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고장접수지원센터 홈페이지 : <http://ascenter.energy.or.kr/>

정선군 공고 제2016-46호

2016년 그린빌리지 참여마을 모집공고

정부의 「2016년도 주택지원(그린빌리지)사업 보급계획」에 따라 정부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을 우선 지원하는 그린빌리지 사업신청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2016년 1월 18일
정 선 군 수

1. 지원기간 : 2016. 1. ~ 2.
2. 신 청 자 : 마을(공동체) 대표 또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3. 신청서류 : 그린빌리지 참여신청서 및 구비서류 (별지 서식 1 참조)
4. 신청조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마을
 - 가. 하나의 법정동 단위내에서 그린홈(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치 희망 주택이 10가구 이상인 마을
 - 나. 참여기업의 현장조사를 통해 그린홈 설치가 가능한 주택 10호 이상인 마을
 - 다. 마을 자체적으로 설치 희망자들 간에 합의를 거쳐 에너지원별 (태양광, 태양열, 지열)로 1개의 시공 참여기업을 선택한 마을
 - 라.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5. 지원기준
 - 가. 그린빌리지 대상마을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최종 사업확정될 경우 정부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을 우선 지원
 - 나. 그린빌리지 대상마을은 아래의 보조금 지원단가로 보조됨

에너지원	설비용량	보조금 지원단가	비고
태양광	3kW이하	2,000,000원	국비보조금 별도
태양열	4㎡초과 ~ 7㎡이하	1,000,000원	“
	7㎡초과 ~ 14㎡이하	2,000,000원	“
	14㎡초과 ~ 20㎡이하	2,500,000원	“
지열	10.5kW이하	2,800,000원	“
	10.5kW초과 ~ 17.5kW이하	4,000,000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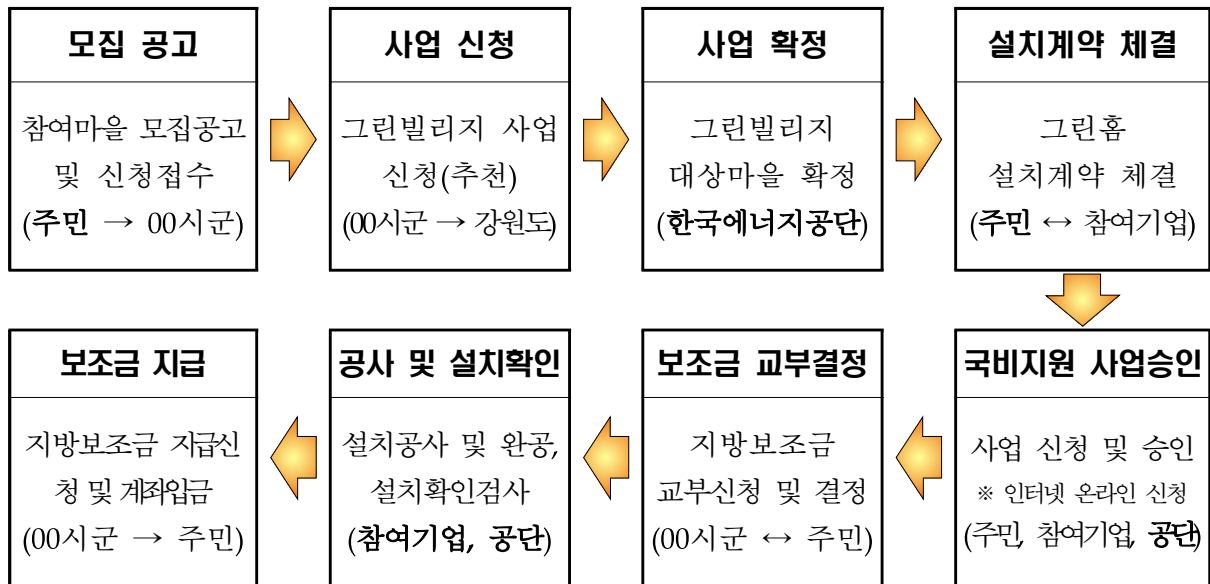
주) 상기 보조금 지원단가에는 시 및 도의 보조금이 합산된 금액임

6. 지원절차 및 방법

가. 그린홈 설치가 완료되면 설치 주민에게 지방보조금을 직접 지급

나.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절차는 개별주택과 동일하며 정선군에서 공고한 「2016년도 그린홈 보급사업 공고」를 참조

7. 사업 추진절차



8. 유의사항

가. 그린빌리지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마을이 2개 이상일 경우, 아래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최대 2개 마을까지 강원도에 추천순위를 정하여 사업신청할 예정

나. 그린빌리지 선정기준

- ① (1순위) 그린빌리지 사업신청조건을 충족하고, 과거 3년 이내('12년~'14년) 그린빌리지로 지원받지 않은 마을
- ② (2순위) 그린빌리지 사업신청조건을 충족하고, 동일한 조건일 경우 신청마을의 그린홈 설치희망 주택수가 많은 마을

다. 그린빌리지 지원대상에 대한 세부기준은 한국에너지공단의 2016년도 주택지원 (그린빌리지)사업 보급계획(2016.1.13)에 준함

라. 그린빌리지 최종확정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최종결정하므로 우리시 선정기준과 별도로 사업확정이 되지않을 수 있음을 양지바랍니다.

마. 그린홈 홈페이지 인터넷 주소 : <http://greenhome.kemco.or.kr>

바. 군 담당부서 : 정선군 지역경제과(☎ 560-2434)

별지 서식 1

그린빌리지 참여신청서

☐ 사 업 명 : 2016년 그린빌리지 보급사업

☐ 신청마을명 :

☐ 마을대표자

성 명		집전화번호	
주 소		휴대폰번호	

☐ 그린홈 설치희망 주택수

에너지원	합 계	태양광	태양열	지 열
주 택 수	호	호	호	호
총설비용량		kW	m ²	kW

☐ 참여기업 선택현황

에너지원	상호	소재지	담당자 성명/연락처

정부 및 정선군에서 시행중인 「2016년 그린빌리지 보급사업」에 대상 마을로 선정되기를 희망하여 참여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대표자 : (인)

구비서류 1. 그린빌리지 설치희망 주택 내역서 1부.

2. 설치희망 주택별 주택사진 각 2매.(사진파일 별도 제공).

정선군수 귀하

2016년 그린빌리지 설치희망 주택 내역서

번호	설치 에너지원 (체크 하세요)	설치 용량	소유자 (신청인)	새주소	집전화번호	휴대폰	건축물 대장유무	전문기업 현 장조사결과	선택한 시공 참여기업명	정부보조금	주민 자부 담액	주민동의 (서명,도장)
1	☒ 태양광 ☐ 태양열 ☐ 지 열	3kW	홍길동				등기	설치가능		345만원	600만원	홍길동
2	☐ 태양광 ☒ 태양열 ☐ 지 열	10㎡	김길동				등기	설치가능		446만원	400만원	김길동
3	☐ 태양광 ☐ 태양열 ☐ 지 열			(상 기 내 역 은 작 성 예 시)								
4	☐ 태양광 ☐ 태양열 ☐ 지 열											
5	☐ 태양광 ☐ 태양열 ☐ 지 열											
6	☐ 태양광 ☐ 태양열 ☐ 지 열											
7	☐ 태양광 ☐ 태양열 ☐ 지 열											
8	☐ 태양광 ☐ 태양열 ☐ 지 열											
9	☐ 태양광 ☐ 태양열 ☐ 지 열											
10	☐ 태양광 ☐ 태양열 ☐ 지 열											

※ 주민 자부담액 : 총 설치비에서 정부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금액을 말하며, 지방보조금은 설치완료되면 주민에게 직접 지급